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 관련 정보
- 확정판결 후에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 불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8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8.
3. 회부연월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소송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진행되는 소송 정보도 공개가 거부됩니다. 최근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소송 비용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법무부의 변호사 수임료 정보공개 청구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은 매우 공적이고, 그 비용이 세금에 기반한다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로 정하고자 함

니다. 공적 정보공개 확대로 국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 -----. -----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 6. (현행과 같음)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	

현행	개정안
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현행	개정안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현행	개정안
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임.¹⁾

동법은 제3조 및 제6조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원칙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²⁾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음.³⁾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생략)

②~④ (생략)

다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도 모든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제9조제1항 단서 및 각 호4)에서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따른 비밀·비공개 사항(제1호)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3호),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제4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제5호), 개인정보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④ (생략)

(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제7호), 부동산투기·매점매석(제8호) 등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중대하거나 현저한 이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동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 중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제9조제1항제4호)’ 또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침해(제9조제1항제7호)’ 등을 사유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⁵⁾⁶⁾들이 있음.

- 5) 인천광역시의 소송과 관련한 2019년 12월 26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는 정보부존재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음.

<정보공개 청구 내역>

1. 소송대리인 입찰계획서
2. 소송대리인 선정과정 회의록
3. 소송대리인 선정결과표
4. 소송대리인 선정 기안문서
5. 법무법인 B 소송위임계약서

(인천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53761 판결, 정보공개처분취소)

법무부의 소송과 관련한 2023년 3월 31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무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음.

<정보공개 청구 내역>

1.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2.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 명과 변호사 명
3. 로펌계약서(개인정보 제외)
4. 담당 공무원 명단

(서울행정법원 2024.2.22. 선고, 2023구합67934 판결, 정보공개처분취소)

- 6) 개정안의 제안 이유 중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방송사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방송심의 소송비 공개 거부…방통위 “수임료는 영업비밀”, 한국기자협회, 2024.6.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기초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소송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소송위임계약서(법무법인의 수임료 포함) 또는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⁷⁾을 한 바 있음.

7) 인천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53761 판결, 정보공개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무법인 B 소송위임계약서’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발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수임료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24.2.22. 선고, 2023구합67934 판결, 정보공개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23. 4. 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발췌)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고,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심판을 위하여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히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비용을 집행할 때에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확정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비공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소송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일부 사항만을 공개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소송 정보는 소장, 판결문, 답변서, 수사기록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관련된 소송 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소송 정보에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국민의 재산·생활 보호를 예외적인 공개 사유로 규정⁸⁾하고 있음을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생략)

참고하여, 광범위한 소송 정보 중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법인등이 이를 감수해야 하는 범위로 구체화 또는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소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사적인 분야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정보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행정안전부는 소송에 관한 정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특별한 제한 없이 모든 자료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와 관련자의 권리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②~④ (생략)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원칙적으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생명·신체·건강 또는 재산·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개별 청구 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각각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기초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 과정 중 발생한 소송과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 제3자의 영업 비밀 정보를 취득·보유할 수 있는데, 공개 강행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인과 제3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소송 정보의 비공개 적용 여부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